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746호 2023. 4. 18.(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_____ 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4.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도래(2023년 12월 31일)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도래로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장애인복지과, 전화 032-560-5871, 팩스 032-560-2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제2청사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팀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도래(2023년 12월 31일)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도래로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지 참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의2(존속기한)</u>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 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u>제3조의2(존속기한)</u> -----<u>2028년 12월 31일</u>----- -----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